

(비공식 번역본)

##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6/2563호

### 기반 경제 투자촉진 변경사항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종합 안내사항 제2/2557호 투자촉진 정책과 규율 관련 사항은

지방의 투자촉진과 기업가들의 수자원 지방기관 운영에 대한 협조 지원을 하기 위한것이며 이 외에도 생산과 지방기관의 서비스 분야 또는 지역의 농업이나 변형 농업, 경공업 분야, 지역 관광사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16항, 18항, 31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 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림

1. 2020년 3월 11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5/2563호 기반 경제 투자촉진 규정을 취소
2. 투자촉진을 요청할수있는 프로젝트의 권리와 혜택에 대한 요구조건은 기반 경제 투자촉진 규정을 따름
  - 2.1 이미 진행을 하고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을 받는 여부에 상관없이 따름
  - (1) 이전과 같이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위원회가 규정에 맞는 투자 요청을 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종류이거나 법인세 면제나 감면 혜택, 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 여야 함
  - (2) 투자촉진을 받지못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촉진위원회가 아래의 규정을 따르는 투자촉진위원회가 발표한 종류의 프로젝트 종류여야함

#### 조건

- (1) 각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이 1,000,000바트 이상(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이어야 하며 지방 기관의 지원금액이 건당 200,000바트 이상 이어야함
- (2) 생산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지방 기관을 지원하여야 하는것으로 가뭄의 문제나 홍수의 문제를 완화 및 개선하는것등을 3년이내로 마무리 해야하며 이 시점은 투자촉진서가 발급된 이후로 계산하고 이러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원은 가뭄이나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수자원공사의 승인 및 국가의 수자원 정책과 일치되는 방향이어야함
- (3) 투자촉진을 받는 지방 기관이란 지방의 관련기관에 등록을 한 협동조합이나 기업 공동체 또는 한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지방 관리기관으로 농업, 가공농업, 경공업, 지역관광업 또는 지방기관이 해당

#### 권리와 혜택

- (1) 법인세 면제혜택을 3년간 투자금의 120%(토지와 순환자본 제외)만큼 주며 투자금으로부터 법인세 면제를 계산하는 이전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되는 경우(토지와 순환자본 제외)로서 투자위원회에서 지정한 지방 기관에 실제로 지원금을 내는 경우로 공장설립비용, 기계와 장비비용,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및 수자원을 끌어와 보관하기 위한 지원 비용, 관개용 댐 건설 및 수리, 끌어오는 비용과 보호 및 세척비용등이 해당하며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는 기간은 투자촉진서를 받은 이후로부터 계산

(2) 세금에 대한 권리와 혜택이 없는 경우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호의 규정을 따름

2.2 이전과 같은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받고있으며 아직 법인세 면제 혜택이 끝나지 않은 경우나 투자촉진을 요청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받음

#### 조건

(1) 지방 기관에 대한 투자금액이 최소 20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2) 생산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지방 기관을 지원하여야 하는것으로 가뭄의 문제나 홍수의 문제를 완화 및 개선하는것등을 3년이내로 마무리 해야하며 투자촉진서가 발급된 이후로 계산하며 이러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원은 가뭄이나 홍수가 자주 일어난 지역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수자원공사의 승인 및 국가의 수자원 정책과 일치되는 방향이어야함

(3) 투자촉진을 받는 지방 기관이란 지방의 관련기관에 등록을 한 협동조합이나 기업 공동체 또는 한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지방 관리기관으로 농업, 가공농업, 경공업, 지역관광업 또는 지방기관이 해당하며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이 해당

#### 권리와 혜택

법인세 면제혜택을 3년간 투자금의 120%(토지와 순환자본 제외)만큼 주며 투자금으로부터 법인세 면제를 계산하는 이전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되는 경우(토지와 순환자본 제외)로서 투자위원회에서 지정한 지방 기관에 실제로 지원금을 내는 경우로 공장설립비용, 기계와 장비비용,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및 수자원을 끌어와 보관하기 위한 지원 비용, 관개용 댐 건설 및 수리, 끌어오는 비용과 보호 및 세척비용등이 해당

3. 규정을 따라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다른 규정에 맞는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수 있음

4. 2021년의 마지막 날까지 투자촉진요청을 해야함

2020년 4월 13일부터 적용

2020년 5월 14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